

2025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 정 기 회 의 -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오후 8시  
서울대학교 39동 B118호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Eng:in]

# 2025 하반기 공과대학학생회대표자회의 정기회의 자료집

## 목 차

### ▶ 통과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2. 대의원 확정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5. 회의 진행 순서 통과

### ▶ 보고안건

1.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3. 2025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4. 공과대학 법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5. 2025 공과대학 축제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 논의 안건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논의의 건

### ▶ 심의 안건

1. 2025년 1기(2024.12.1.~2025.6.16.) 결산(안)

### ▶ 별첨

1.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2.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안서
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제안서

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제안서
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 **부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23.10.13.)

# I . 통과 안건

1. 공과대학 학생회장 선서
2. 대의원 확정
3. 공학대회 시행세칙 확정
4. 공학대회 안건 채택
5. 회의 진행 순서 통과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중략)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학대회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위	인원수
<b>의장단</b>	<b>2명</b>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정웅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안동현
<b>건축학과</b>	<b>5명</b>
건축학전공 회장	배준성
건축학전공 대표	고상진
건축공학전공 대표	안성준
2학년 대표	김현서
1학년 대표	강월빈
<b>건설환경공학부</b>	<b>5명</b>
학생회장	우정수
부학생회장	김지호
부학생회장	상세준
2학년 대표	박천욱
1학년 대표	이재욱
<b>광역반</b>	<b>5명</b>
학생회장	이승준
부학생회장	이대성
23학번 대표	신지환
24학번 대표	김세은
25학번 대표	김시영
<b>기계공학부</b>	<b>8명</b>
학생회장	이윤수
부학생회장	이제현
2학년 A반 대표	조예나
2학년 B반 대표	윤정욱
2학년 C반 대표	박상범
1학년 A반 대표	조연우
1학년 B반 대표	김찬주
1학년 C반 대표	윤현철

<b>산업공학과</b>	<b>7명</b>
학생회장	박지인
부학생회장	윤찬식
부학생회장	차윤주
4학년 대표	박석우
3학년 대표	강건
2학년 대표	강신웅
1학년 대표	정동윤
<b>에너지자원공학과</b>	<b>4명</b>
학생회장	최윤희
부학생회장	임성민
2학년 대표	박시준
1학년 대표	강세준
<b>원자핵공학과</b>	<b>6명</b>
학생회장	고광민
부학생회장	김자연
4학년 대표	이용준
3학년 대표	김동하
2학년 대표	김이삭
1학년 대표	김지원
<b>재료공학부</b>	<b>5명</b>
학생회장	김주혁
부학생회장	김보경
부학생회장	이주호
1학년 ELA반 대표	김민혁
1학년 PLA반 대표	최재웅

<b>전기정보공학부</b>	<b>16명</b>
학생회장	장하늘
4학년 R반 대표	김태훈
4학년 롤루반 대표	여채원
4학년 랄라반 대표	이준오
4학년 C반 대표	김해원
3학년 롤루반 대표	김유경
3학년 랄라반 대표	김석환
3학년 C반 대표	김주영
2학년 R반 대표	이원택
2학년 롤루반 대표	편성주
2학년 랄라반 대표	강채린
2학년 C반 대표	우수한
1학년 R반 대표	김태현
1학년 롤루반 대표	최재원
1학년 랄라반 대표	정유수
1학년 C반 대표	송희경
<b>조선해양공학과</b>	<b>5명</b>
부학생회장	박상호
4학년 대표	노혜빈
3학년 대표	박진의
2학년 대표	박정원
1학년 대표	이강현

<b>컴퓨터공학부</b>	<b>6명</b>
학생회장	김도현
부학생회장	임태빈
4학년 대표	황명빈
3학년 대표	최은우
2학년 대표	정민재
1학년 대표	이승준
<b>항공우주공학과</b>	<b>4명</b>
학생회장	최은정
부학생회장	홍지민
2학년 대표	김현준
1학년 대표	정준서
<b>화학생물공학부</b>	<b>6명</b>
학생회장	이시은
부학생회장	이도형
2학년 Acid반 대표	이건우
2학년 Base반 대표	최현승
1학년 Acid반 대표	이다민
1학년 Base반 대표	차무겸
<b>계</b>	<b>84명</b>

##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 제1조 (시행세칙)

-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제3장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본 시행세칙은 공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 ③ 본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본 시행세칙은 공학대회 회기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 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2조 (회의진행과 관련된 원칙)

- ① 공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 회의공개 원칙 : 안건 공고, 방청 공개, 공개토론, 공개표결, 회의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회원 징계에 대한 의사 진행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발언자유 원칙 : 공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의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 원칙
  4. 소수의견 존중 원칙
  5. 일의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즉, 회의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토론과 의결을 거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 원칙 :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안할 수 있다. 변안이 통과되면 다시 표결에 부친다.
- ② ‘회의는 형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의에서 찬반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회의에서 제기할 내용에 대한 다른 대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전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학대회는 결정의 자리이기에 자유토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제3조 (회의용어)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기(會期)”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3. “개의(開議)”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안의 경우 ‘개의’를 제한한다.
4. “폐회(閉會)”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5. “산회(散會)”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6. “휴게(休憩)”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7. “정회(停會)”란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8. “휴회(休會)”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9. “속개(續開)”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10. “독회(讀會)”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의안에 대해서 제1독회에서 의안의 발제와 질의를 다루고, 제2독회에서 제1독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안을 축조심의 및 수정을 하고, 제3독회에서는 총괄심의와 의안에 대한 채택을 하여 이후에 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독회 사이에 휴게하는 것이 보통이다.
11. “발언권(發言權)”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2. “의결권(議決權)”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4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구분된다.

의안(議案)은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으로서 회순 중에서는 논의 및 의결안건을 지칭한다.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에 상정된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 등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이 아니다. 의안은 제출되는 안건과 달리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반대/기권의 표결로 공학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은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이다.
2. 수정안은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이다.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 이견안은 동일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이다.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 제5조 (발언)

-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의장은 신상발언, 규칙발언, 의사진행발언, 질문발언, 찬반발언의 순서로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 ②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신상발언 : 자신의 신상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음을 알았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이다. 속기가 자신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다른 대의원이 왜곡하여 발언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규칙발언 : 회의 진행이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 공학대회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이다.
  3. 의사진행발언 :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다.
  4. 질문발언 : 회의운영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이다.
  5. 찬반발언 :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이사를 표현하는 발언이다.
- ③ 발언자는 소속, 성명, 발언의 종류, 발언의 요지를 먼저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 ④ 발언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의 제안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안건에 대한 발제는 20분 이내로 한다.
  2.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한다.
  3. 기타 발언은 3분 이내로 한다.
- ⑤ 발언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 ⑥ 발언자의 수는 의장의 제안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한한다.

## 제6조 (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 ①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 ② 의장이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물었을 때,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이의를 표명하면 의장은 표결에 부쳐야한다.
- ③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계를 선포하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 ④ 의장은 회칙개정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삭제'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공고한다.

## 제7조 (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공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인준 안건
6. 논의 및 의결안건
7. 심의 안건 (예·결산)
8. 기타 안건 (결의문, 선언문 통과 등)

### 제8조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소심의(逐條審議. 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활용한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축소심의(縮小審議.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 제9조 (안건제출, 의안발의, 안건상정)

- ①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구, 특별기구는 공학대회에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회 전까지,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발의할 수 있다.
-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운영위원회나 다음 공학대회로 이월한다.
- ④ 대의원은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그 발의의 처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 ⑤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은 의장이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 ⑥ 발의에 의한 의안의 상정 순서는 각 호에 따른다.
  1.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여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 부결 시에 원안을 상정한다.
  2.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휴계를 선언하고 각 의안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여 단일수정안을 상정한다. 만약 단일수정안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과 이견안을 함께 묶어 제10조, 제11조의 절차를 거친 후 원안과 이견안을 선택표결에 부친다.

### 제10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

결한다.

-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 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 제11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 ① 찬반토론은 동의(動議)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動議)”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 제12조 (표결)

- ①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대의원은 거수 혹은 구두로 표결한다. 단, 의장이 이의를 물었을 때, 이의가 없어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후에 표결을 박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인준 안건, 심의 안건의 부결은 해당 안건을 다시 작성하여 다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이다.
- ③ 찬성, 반대, 기권에 표결한 각 대의원 명단을 각 집계 때마다 속기한다. 대의원은 표결내용과 함께 단위명을 말하여야 하고 의장은 속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온라인 플랫폼으로 표결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 (예·결산 심의에 관한 조치)

- ① 심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공학대회는 표결로써 예·결산 금액을 삭감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표결 방법의 구성은 의장의 직권에 따른다.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는 처리 후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결산안 발제자는 결산 후 잔액의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③ 의장은 심의안건 발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의원 동의하에 안건 순서 조정,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보고안건**

1.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3. 2025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활동 보고
4. 공과대학 법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5. 2025 공과대학 축제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논의 안건**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논의의 건
- 별첨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안서
  - 별첨 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 별첨 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제안서
  - 별첨 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 별첨 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제안서
  - 별첨 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 **심의 안건**

1. 2025년 1기(2024.12.1.~2025.6.16.) 결산(안)
- 별첨 1.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 별첨 2.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 **보고안건**

1.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3. 2025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4. 공과대학 법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5. 2025 공과대학 축제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심의 안건**

1. 2025년 1기(2024.12.1.~2025.6.16.) 결산(안)
  - 별첨 1.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 별첨 2.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 **논의 안건**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논의의 건
  - 별첨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안서
  - 별첨 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 별첨 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제안서
  - 별첨 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 별첨 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제안서
  - 별첨 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 Ⅱ . 보고 안건

1.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2.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3. 2025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4. 공과대학 법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5. 2025 공과대학 축제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202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

## 표기 주석

- ① [표] 내부 동일 직위의 설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② 상반기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구성 보고와 비교하여, 신규 인준(\*) 및 직위 변동(\*\*)의 변동이 있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별 표기를 병기하였습니다.

[표 1-1] 집행위원장단

직위	성명	소속	학번
집행위원장	서 음**	조선해양공학과	23
부집행위원장	이민재	건축학과	23

[비고] 집행위원장 (전 교육지원국 국장 및 소통협력국 국장)

[표 1-2] 교육지원국 2기

직위	성명	소속	학번
국장	최의성**	건설환경공학부	23
국원	김나연	컴퓨터공학부	25
국원	김호윤	재료공학부	25
국원	권재윤	전기·정보공학부	25
국원	심윤서	전기·정보공학부	25
국원	이지우*	화학생물공학부	25

[비고] 교육지원국장(디자인팀장 겸임)

[표 1-3] 문화 1국 2기

직위	성명	소속	학번
국장	조우진	기계공학부	24
부국장	신정규	건설환경공학부	24
국원	권민준	건설환경공학부	24
국원	김도은	건설환경공학부	25
국원	박서진*	건설환경공학부	25
국원	석주원	재료공학부	25
국원	이유나*	재료공학부	25
국원	정아현	화학생물공학부	24
국원	정상빈*	건설환경공학부	25
국원	정은찬	건설환경공학부	25
국원	최서진	전기·정보공학부	25
국원	Khairullah Septi	건설환경공학부	23

[표 1-4] 문화 2국 2기

직위	성명	소속	학번
국장	이의빈**	조선해양공학과	24
부국장	이서진**	기계공학부	24
국원	김서영	조선해양공학과	24
국원	김수민	건설환경공학부	24
국원	김종현	재료공학부	25
국원	김준영	재료공학부	25
국원	박시은	전기·정보공학부	23
국원	오윤서	전기·정보공학부	23
국원	윤서연	조선해양공학과	24
국원	이진우	전기·정보공학부	25
국원	정은비	전기·정보공학부	23
국원	최윤희	조선해양공학과	25

[비고] 문화 2국 국장(전 문화 2국 부국장), 문화 2국 부국장(전 문화 2국 국원)

[표 1-5] 소통협력국 2기

직위	성명	소속	학번
국장	강수민**	재료공학부	24
부국장	윤정옥**	기계공학부	24
국원	강훈민	화학생물공학부	25
국원	김도훈	건설환경공학부	24
국원	김태훈	화학생물공학부	24
국원	송명수	에너지지원공학과	25
국원	신서윤	재료공학부	25
국원	이주형	전기·정보공학부	24
국원	장지윤*	원자핵공학과	24
국원	최우리*	전기·정보공학부	25
국원	한재영*	산업공학과	25

[비고] 소통협력국 국장(전 소통협력국 부국장), 소통협력국 부국장(전 소통협력국 국원)

[표 1-6] 진로국 2기

직위	성명	소속	학번
국장	이서윤**	화학생물공학부	24
부국장	한재현**	화학생물공학부	24
국원	강지후	재료공학부	24
국원	김정연	전기·정보공학부	24
국원	나신영	기계공학부	24
국원	서동찬	화학생물공학부	25
국원	이서영	조선해양공학과	25
국원	이설민	기계공학부	25
국원	이정훈	기계공학부	24
국원	함윤정	화학생물공학부	24

[비고] 진로국 국장(전 진로국 부국장), 진로국 부국장(전 진로국 국원)

[표 1-7] 행정복지국 2기

직위	성명	소속	학번
국장	손지유	조선해양공학과	24
부국장	최현승	화학생물공학부	24
국원	강상혁	화학생물공학부	24
국원	김노현	건설환경공학부	25
국원	박상원	조선해양공학과	25
국원	안준표*	기계공학부	25
국원	장민준	재료공학부	24

## 제37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활동 보고

### 1. 중점 사업

#### 1) <2025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진행 완료 (보고안건 3 참고)

‘찾아가는 공학봉사단’(이하 “공학봉사단”)은 교육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방학 기간 중 봉사 장소를 직접 찾아가 공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교류하는 재능 기부형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구입니다.

공학봉사단은 2017년 처음 설립된 이후 매년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연례적으로 이어온 사업입니다. 올해 역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제20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특별기구로 인준을 받았으며, 이후 제21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인준을 거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활동은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4박 5일간) 평창에 위치한 평창초등학교와 대화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단장단 2인과 스태프 6인, 공과대학 소속 학우 31인이 함께하여 교육 봉사와 교류의 의미를 이어갔습니다.

#### 2) <공과대학 가을축제> 진행 완료 (집행위원회 활동보고 및 보고안건 4 참고)

2025 공과대학 축제 공트릭스(CTRIX)가 9월 24일(수)과 25일(목), 양일간 붉은 광장 일대, 39동 필로티 및 버들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 기간 동안

1일차(9월 24일)에는 붉은 광장에서 학부/과 부스가 운영되었고, 39동 필로티에서는 집행위원회 부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붉은 광장 및 301동에서 간식 행사가 별도로 마련되어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2일차(9월 25일)에는 39동 필로티와 버들골에서 집행위원회 부스가 운영되며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2일차 저녁 이후에는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동아리 공연과 초청 게스트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초청 게스트로는 라포엠(LA POEM), 비비(BIBI), Kep1er, 이창섭이 참여하여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크립토크의 후원을 받아 원활하게 준비되었으며, 학우들이 함께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3) 서울대학교 창업 캠프 진행 완료

서울대학교 창업 캠프(이하 “창업 캠프”)의 개최 목적은 창업 의지가 있는 공과대학 및 경영대학 학부생들을 연결하고, 미래의 창업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2박 3일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시흥캠퍼스에서 제1회 서울대학교 창업 캠프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과대학 학생회, 경영대학 학생회, 벤처경영 학생회가 연합하여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는 “당신만의 플랫폼을 설계하라: '연결'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연사 특강과 워크세션은 시흥캠퍼스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8월 30일에는 관악캠퍼스로 이동하여 청중 참여를 원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피칭 경연을 실시하였습니다.

### 4) 사회과학-공학 융합 학술 컨퍼런스 진행 완료

사회과학-공학 융합 학술 컨퍼런스(이하“연합 컨퍼런스”)의 개최 목적은 사회과학과 공학의 교차점에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학문적-기술적 접근을 실험하고, 실질적인 탐구 경험을 제공하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과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연합하여 공동 주최하였으며, 8월 19일(화)에 사전 행사가, 9월 16일(화)에 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8월 4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8월 5일(화)에 참가자 및 팀 편성을 발표하였으며, 사전 행사에서는 이준환 교수님의 강연 이후, 이번 연합 컨퍼런스의 주제인 평형과 불균형이 공개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팀들은 자율적으로 회의 및 탐구 활동을 이어갔으며, 필요 시 사회대학 및 공과대학 교수님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물로 제출된 보고서 및 발표 자료는 본행사 당일 발표되었고, 청중 참여를 신청한 학우들이 함께한 대상으로 가운데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 2. 집행위원회 활동 (중점사업 外)

### ① 집행위원장단

#### (1) 편의점 실태조사

공과대학 학생회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가 연합하여 공과대학 및 첨단융합학부 내에 위치한 편의점들의 시설 현황과 이용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시설 개선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 (2) 2기 집행위원 모집

공과대학 학생회 [Eng:in]은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원활한 집행위원회 활동을 위해 2기 집행위원회 신입 위원을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집은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7월 9일 1차 합격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7월 14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제25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인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3) 공과대학 학생회실 및 창고 정리 (진행중)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사업 종료 후 사용된 물품의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학생회실 및 창고 정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 내부 위원들을 모집하였으며, 10월 10일(금) 학생회실 및 창고 정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② 교육지원국

#### (1) 제2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진행중)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4월 교육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봉구스밥버거 서울대공대점 폐점 관련 대응, △ 수강신청 사이트 환경 개선, △ 정규학기 통계학, 통계학실험 공과대학 분반 증설, △ 윗공대 폭설 관련 대책 마련, △ 공과대학 교과목 크로스리스팅, △ 강의실 전자기기 충전의 6가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5월 27일 모의 교육과정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 추가합격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

지원 방안, △윗공대 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열선 설치 및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과대학 내 동일 교과목 상호인정 체계 확대, △강의실 전자기기 충전 인프라 확충의 4가지 안건을 제2차 교육과정개선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공과대학 내 시설 관련 불만 사항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5 공과대학 시설개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조사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정리 완료 후 의제 발제문을 추가 작성하여 제2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 여름 멘토링 진행 완료**

여름방학 동안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여름 멘토링 행사를 자연과학대학과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여름 멘토링에 참여할 멘토를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여름멘토링 가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학우들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 **③ 문화 1국**

### **(1) 공대생의 밤 행사 진행 완료**

1학기 기말고사 직전, 학우들이 학업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팝콘, 슬러시 등 다양한 간식을 즐기며 영화를 관람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5월 28일 (수) 18:00~23:00, BK홀 및 39동 B118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신청은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사전 접수 형식으로 받았으며, 이는 대략적인 인원 파악을 위한 절차였기에, 신청하지 못한 학우들도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④ 문화 2국**

### **(1) 간식행사 진행 완료**

학업에 지친 학우들이 잠시나마 긴장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 간식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간고사 간식행사와 기말고사 간식행사는 각각 4월 17일(목)과 6월 4일(수)에 진행되었습니다. 각각 붉은광장과 301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3:00부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준비된 간식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중간고사 간식행사의 경우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각 위치별로 100개씩을 준비하였으며, 준비된 간식 수량 부족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말고사 간식행사의 경우 각 위치별로 180개씩 준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 **(2) Eng:ing 스터디카페**

1학기 중간고사 직전, 학우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며 힘을 학업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일일 스터디카페의 형식의 Eng:ing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4월 17일(목) 18:00~23:00까지 39동 B118호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 학우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음료와 초콜릿 등 다양한 간식을 비치하여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⑤ 소통협력국**

### **(1) 제휴 참여 이벤트 진행**

집행위원회 1기 당시 체결한 제휴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방식은 제휴 매장에 방문한 이후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 계정을 언급하고, 이후 해당 게시물에 '참여'라는 댓글을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 중 6명을 추첨하여 상품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추첨 및 상품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2) 공과대학 마스코트 GONG모전 (진행 도중 폐기)**

공과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의 부재에 착안하여, 마스코트를 선정하고자 공과대학 마스코트 GONG모전(이하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학우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했으며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마스코트 초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없어, 본 사업은 진행 도중 폐기되었습니다.

### **(3) 공과대학 홈페이지 개선 사업 (진행 도중 중지)**

공과대학 학생회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않아, 사용자 친화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자 공과대학 홈페이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 내부 위원들이 직접 개선 및 희망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동아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동아리와의 협업이 불발됨에 따라, 본 사업은 진행 도중 중지되었습니다.

#### **(4) 공과대학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 홍보 사업 진행 완료**

공과대학 학생회 카카오톡 채널을 인식하고 있는 학우들의 수가 적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 업데이트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입장 메시지와 자동 응답 메시지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과대학 내 시설 관련 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채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중점사업 중 하나인 공과대학 축제의 폐막제 공연의 A-1구역 사전 신청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여, 학우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채널 활성화에 성공하였습니다.

#### **(5) 집행위원회 MT 진행 완료**

집행위원회의 단결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1박 2일간) 우이동에서 집행위원회 2기 MT를 진행하였습니다.

### **⑥ 진로국**

#### **(1) 2025 공과대학 다전공 백서 제작 완료**

복수전공, 부전공 등 다전공을 준비하는 공과대학 학우들에게 다전공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전공 백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공과대학 소속 13개 학과와 공과대학 주관 연합 전공 3개 학과를 비롯하여, 2025년 2월에 실시한 수요 조사의 결과로 선정된 5개 학과의 다전공 관련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전공 진입 및 다전공 이수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각 학과 홈페이지에 2025학년도 1학기에 업로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완료된 백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과대학 학생회 SNS 계정의 링크트리에

바로가기를 추가하여 학우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6월 CEO 멘토링 데이 진행 완료**

공과대학 학우들의 진로 고민을 덜고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기업인 대면 세미나의 형식의 6월 CEO 멘토링 데이(이하 “멘토링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컴투스 前대표를 초청하여 39동 B101호에서 멘토링 데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3) 비대면 연사 인터뷰 카드뉴스 진행(진행중)**

공과대학 학우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연사들과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공과대학 학생회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자 하였습니다.

9월 4일(목) 회의를 통해 연사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9월 11일(목)에는 연사 섭외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연사 섭외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인터뷰를 진행한 뒤 카드뉴스로 정리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⑦ 행정복지국**

### **(1) 학생회실 개방 및 물품 대여 사업(진행중)**

학우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학생회식 개방 사업과 물품 대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회실 개방 사업은 회의실 본래의 목적 외에도 프린터 사용, 휴식 공간 활용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동시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실험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사업은 1학기에는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2학기에는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2) 교양 수학 모의고사 사업 진행 완료**

수학 1 수업을 수강하는 학우들의 기말고사 대비를 지원하고자 교양 수학 모의고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의고사 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받았으며, 실제 모의고사는 6월 4일(수) 39동 B118호와 BK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집행위원회에서 수학 1 기출 문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모의고사 시행 이후 성적을 채점하였으며, 성적 상위 우수자 10명에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 **(3) 2025 공과대학 강의실 장애학우 시설 설치 실태조사 진행(진행중)**

공과대학 강의실 내부의 장애학우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불편사항 및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수합된 의견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 **(4) 시각경보 장치 조사 진행**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공과대학 건물들 내부에 시각경보 장치 설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시각경보 장치 설치 현황을 정리 완료 하였으며, 이를 총학생회에 자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2025 찾아가는 공학봉사단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1. <공학봉사단> 특별기구 인준

‘공학봉사단’은 교육 소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여름방학 동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교류하는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특별기구입니다. 2017년 첫 활동 이후 매년 공과대학 학생회의 특별기구로 인준되어 활동해 왔으며, 올해 역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9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2. 특별기구 구성 및 활동

#### (1) 특별기구 구성

4월 30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특별기구 인준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단장단 2인을 인준하였습니다. 이후 5월 14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와 5월 28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스태프 6인을 인준하였습니다.

직위	성명	소속	학번
단장	김주영	전기·정보공학부	23
부단장	최현승	화학생물공학부	24
스태프	김태훈	화학생물공학부	24
스태프	김호윤	재료공학부	25
스태프	손지유	조선해양공학과	24
스태프	이익빈	조선해양공학과	24
스태프	이정웅	건설환경공학부	22
스태프	이해미	화학생물공학부	25

#### (2) 특별기구 활동

(06.23.-6.27.) 공과대학 전체 구성원 대상 멘토 모집

(07.08.) 공학봉사단 OT 진행

(07.17.) 단장단 평창 사전 답사 진행

(7-8월 중) 멘토단 회의 진행 및 멘토링 봉사 준비

(08.04.-08.08.) 4박 5일간, 평창초등학교 및 대화초등학교 멘토링 봉사 진행

#### (3) 특별기구 해산

활동 종료 후 행정실과 협의하여 1365 시스템에 공학봉사단 봉사 시간 입력을 요청하고,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잔여 회계처리와 인수인계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특별기구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공과대학 법제 특별위원회> 특별기구 인준

‘공과대학 법제 특별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개정, 공과대학학생 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신설 등 학생회 전반의 회칙 및 세칙 개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기구입니다. 현행 학생회칙과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23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2. 특별기구 구성 및 활동

### (1) 특별기구 구성

6월 25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특별기구 인준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위원장단 2인을 인준하였습니다. 이후 7월 9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24차 회의와 7월 30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팀장단 및 위원을 인준하였습니다.

직위	성명	소속	학번
위원장 (제1팀장 겸임)	김주영	전기·정보공학부	23
부위원장 (제3팀장 겸임)	안동현	화학생물공학부	21
제2팀장	윤정욱	기계공학부	24
제2팀 팀원	조예나	기계공학부	24
제3팀 팀원	신혜연	화학생물공학부	25

### (2) 특별기구 활동

- (07.15.-7.22.) 공과대학 전체 구성원 대상 위원 모집
- (07.24.-7.27.) 공과대학 전체 구성원 대상 위원 연장 모집
- (07.29.) 공과대학 법제 특별위원회 OT 진행
- (8월 중) 팀 회의 진행 및 법제 개편 제안서 작성
- (9월 중) 법제 개편 제안서를 바탕으로 회칙 및 세칙 개정 작업 진행

### (3) 특별기구 해산

하반기 정기 공학대회에서 회칙 및 세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어 학생회칙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이를 근거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운영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어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 해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기구를

해산할 예정입니다.

# 2025 공과대학 축제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1. 구성 보고

직위	성명	소속/학번
축제준비위원장	이의빈	조선해양공학과 24학번
부축제준비위원장	이정용	건설환경공학부 22학번
기획 1팀 팀장	조우진	기계공학부 24학번
기획 1팀 부팀장	신정규	건설환경공학부 24학번
기획 2팀 팀장	유현준	전기정보공학부 23학번
기획 2팀 부팀장	이서진	기계공학부 24학번
공연팀 팀장	한상진	기계공학부 24학번
공연팀 부팀장	윤정옥	기계공학부 24학번
대외협력팀 팀장	서용	조선해양공학과 23학번
대외협력팀 부팀장	신서윤	재료공학부 25학번
안전팀 팀장	안동현	화학생물공학부 21학번
안전팀 부팀장	강수민	재료공학부 24학번
기획1팀 팀원	권민준	건설환경공학부 24학번
기획1팀 팀원	김도은	건설환경공학부 25학번
기획1팀 팀원	석주원	재료공학부 25학번
기획1팀 팀원	정아현	화학생물공학부 25학번
기획1팀 팀원	정은찬	건설환경공학부 25학번
기획1팀 팀원	최서진	전기·정보공학부 25학번
기획1팀 팀원	카이	건설환경공학부 23학번
기획2팀 팀원	김수민	건설환경공학부 24학번
기획2팀 팀원	박시은	전기정보공학부 23학번
기획2팀 팀원	오윤서	전기정보공학부 23학번
기획2팀 팀원	전여준	전기정보공학부 24학번
기획2팀 팀원	정은비	전기정보공학부 23학번
공연팀 팀원	최윤희	조선해양공학과 25학번
공연팀 팀원	김준영	재료공학부 25학번
공연팀 팀원	이진우	전기정보공학부 25학번
공연팀 팀원	김중현	재료공학부 25학번
공연팀 팀원	윤서연	조선해양공학과 24학번
공연팀 팀원	김서영	조선해양공학과 24학번
안전팀 팀원	김도훈	건설환경공학부 24학번
안전팀 팀원	이주형	전기정보공학부 24학번
안전팀 팀원	손지유	조선해양공학과 24학번
안전팀 팀원	최현승	화학생물공학부 24학번
안전팀 팀원	이서윤	화학생물공학부 24학번
안전팀 팀원	한재현	화학생물공학부 24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장민준	재료공학부 24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최의성	건설환경공학부 22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김나연	컴퓨터공학부 25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권재운	전기·정보공학부 25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심윤서	전기·정보공학부 25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김호윤	재료공학부 25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김태훈	화학생물공학부 24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박건우	건설환경공학부 24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송명수	에너지자원공학과 25학번
대외협력팀 팀원	강훈민	화학생물공학부 25학번

## 2. 활동 보고

202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가을축제 <그트릭스>가 지난 2025.09.24 .~ 25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 1) 학부/과 학생회 부스 운영

9월 24일 11시부터 17시까지 붉은광장에서 8개의 학부/과 학생회가 직접 기획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공과대학 학생들의 화합을 위해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학부/과 학생회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많은 학우들의 참여와 함께 부스 운영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 2) 축제준비위원회 버들골 부스 운영

축제준비위원회는 9월 25일 11시부터 16시까지 버들골에서 다양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기획1팀에서 축제 컨셉에 어울리는 형태의 부스를 기획하였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부스를 운영하였고 부스 참여 횟수에 따라 경품 추첨의 기회도 부여하며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 3) 창의설계축전 - 축제준비위원회 합동 부스 운영

축제준비위원회는 이번 축제에서 9월 24일 ~ 25일 이틀간 38동 필로티 앞에서 창의설계축전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기획 2팀에서 축제 컨셉에 어울리는 형태의 다양한 콘텐츠(추리 이벤트, 로봇 대전 등)를 기획하였고, 콘텐츠에 참여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 4) 창의설계축전 시상식 및 폐막제 운영

지난 9월 25일 16시 30분부터 2025 공과대학 가을축제 <그트릭스>의 폐막제 및 창의설계축전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의설계축전 시상식을 진행한 후 이어서 바로 폐

막제를 진행하여 두 행사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폐막제에서는 동아리 및 연예인들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A-1구역, A-2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 안정 관리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A-1구역은 사전 신청을 받아서 공대생들에게 축제 우선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대략 2000명 정도의 관객분들이 오시며, 성공적으로 폐막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Ⅲ. 논의안건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논의의 건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2025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3], [별첨4]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논의의 건

2025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5], [별첨6]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논의의 건

2025 하반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7], [별첨8]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V. 심의 안건

1. 2025년 1기(2024.12.1.~2025.6.16.) 결산(안)

# 2025년 1기 (2024.12.1.~2025.6.16.) 결산(안)

※ 제37대 공과대학 학생회 [Eng:in]은 74통장을 특정 사업비 지출 통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00통장>

수입 요약			
항	세목	금액	비고
이월금	2024년 2기 이월금	129,000원	
예금이자	예금이자	732원	
산입 총계 (A)		129,732원	
지출 요약			
항	세목	금액	비고
사업비	3월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준비위원회 설문조사 상품	100,000원	
비품비	USB 구입(학생회 통장 접 근용)	10,000원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일괄)	1,000원	
지출 총계 (B)		111,000원	
예산 수지 (A-B) : 18,732원			

<74통장>

수입 요약			
항	세목	금액	비고
이월금	2024년 2기 이월금	30,244원	
예금이자	예금이자	184원	
사업비	(주)한가람문구 제휴금	200,000원	
이월금	총학생회 분담금	3,368,103원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대금	102,042,001원	행정실 지원금 별도
산입 총계 (A)		105,640,532원	
지출 요약			
항	세목	금액	비고
사업비	새내기 새로배움터 대금	101,954,200원	행정실 지원금 별도
사업비	드롭박스	176,163원	
사업비	노션 구독료	184,800원	연간 플러스 요금제
사업비	교양 수학 모의고사 사업	390,000원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나눠 2번 진행할 예정
사업비	공림픽	606,700원	행정실 지원금 별도
사업비	만우절 행사	199,615원	
사업비	공대생의 밤	338,570원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4,500원	새터 관련 계좌이체 수수료 제외하고 9회
수수료	공동인증수수료	4,400원	
지출 총계 (B)		103,858,948원	
예산 수지 (A-B) : 1,781,584원			

# 별첨

1.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2.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3.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안서
4.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부개정안
5.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제안서
6.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7.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제안서
8.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시행세칙 제정안

## 1

##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00통장)

&lt;00통장&gt;

연번	거래일자	항	목	산입(원)	지출(원)	잔액(원)	담당자	비고
0	2024.12.21 03:05:17	예금이자	예금이자	732	0	129,732	-	
1	2025.03.27 16:49:09	사업비	3월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준비위원회 설문조사 상품	0	100,000	29,732	김주영	
2	2025.03.27 16:49:09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29,232	김주영	
3	2025.05.21 14:02:56	비품비	USB 구입(학생회 통장 접근용)	0	10,000	19,232	김주영	
4	2025.05.21 14:02:56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18,732	김주영	

## 2

## 2025년 1기 통장 세부내역 (74통장)

&lt;74통장&gt;

※ 2025 공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준비위원회 세부 내역은 요약함

연번	거래일자	항	목	산입(원)	지출(원)	잔액(원)	담당자	비고
0	2024.12.21 03:05:17	예금이자	예금이자	184	0	30,428	-	
1	2025.01.17 11:46:58	사업비	(주)한가람문구 제휴금	200,000	0	230,428	-	
2	-	기타	2025 공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26,845,000	1,393,390	25,682,038	-	요약
3	2025.02.14 15:09:18	사업비	드롭박스 구독료	0	176,163	25,505,875	이정웅	
4	2025.02.14 15:09:18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25,505,375	이정웅	
5	-	기타	2025 공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65,611,001	52,517,150	38,599,236	-	요약
6	2025.02.21 13:48:06	수수료	공동 인증 수수료	0	4,400	38,594,826	-	
7	-	기타	2025 공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10,256,000	48,763,660	87,166	-	요약
8	2025.03.29 17:49:30	사업비	만우절 행사 분담금	0	27,175	59,991	김주영	
9	-	기타	2025 공과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50,000	0	109,991	-	요약
10	2025.04.10 17:52:03	이월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분담금	3,368,103	0	3,478,094	-	
11	2025.04.11 15:52:06	기타	착오 입금	876,000	0	4,354,094	-	착오 입금
12	2025.04.11 18:08:55	사업비	공림픽	0	170,000	4,184,094	조우진	

13	2025.04.11 18:08:55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4,183,594	조우진	
14	2025.04.11 18:35:52	기타	착오 입금 환급	0	876,000	3,307,594	-	착오 입금 환급
15	2025.04.11 18:35:52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3,307,094	-	
16	2025.04.11 18:45:26	사업비	만우절 행사	0	95,000	3,212,094	이정웅	
17	2025.04.11 18:45:26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3,211,594	이정웅	
18	2025.04.14 12:31:56	사업비	노션 구독료	0	184,800	3,026,794	이정웅	
19	2025.04.14 12:31:56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3,026,294	이정웅	
20	2025.04.14 16:37:47	사업비	공림픽 및 만우절 행사	0	514,140	2,512,154	유현준	
21	2025.04.14 16:37:47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2,511,654	유현준	
22	2025.05.21 13:54:26	사업비	교양 수학 모의고사 사업	0	220,000	2,291,654	손지유	
23	2025.05.21 13:54:26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2,291,154	손지유	
24	2025.05.28 23:19:21	사업비	공대생의 밤	0	338,570	1,952,584	조우진	
25	2025.05.28 23:19:21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1,952,084	조우진	
26	2025.06.20 17:20:36	사업비	교양 수학 모의고사 사업	0	170,000	1,782,084	손지유	
27	2025.06.20 17:20:36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0	500	1,781,584	손지유	

# 부 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23.10.13.)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개정 2017.03.30.  
개정 2017.09.29.  
개정 2018.04.03.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  
개정 2023.10.13.

제1장 총칙 ----- 제1조~제8조

제2장 공과대학 학생총회 ----- 제9조~제14조

제3장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및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1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 제15조~제23조

제2절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 제24조~제29조의2

제4장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 제30조~제37조

제2절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 제38조~제40조의2

제5장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 제41조~제43조

제6장 선거	제44조~제48조
제7장 재정	제49조~제54조
제8장 회칙개정	제55조~제56조
제9장 공과대학 학생회 준비위원회	제57조~제58조
제10장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제59조~제61조
제11장 공과대학 동아리	제62조~제65조
제12장 공과대학 산하기구	
제1절 총칙	제66조~제71조
제2절 (삭제)	제72조~제73조
제3절 (삭제)	제74조~제75조
부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여 학생 자치를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의 학사 과정 재적 중인 자로 한다.

**제3조의2 (회원권의 예외적 인정)** <신설 2017.09.29.>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과대학 학생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이하 ‘운영위원회’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로 문구수정 2023.10.13.]

1.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
2. 자유전공학부에서 공과대학 내 전공으로 진입한 자

#### **제4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회 회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④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⑤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신설 2016.09.22.>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참가권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09.22.>

1.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문구수정 2023.10.13.]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3. 기타 본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제4조의2 (피선거권의 박탈)** <신설 2017.09.29.>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산하기구 및 당해 공과대학 특별기구의 활동과 그 결과를 통해 본회의 명예, 권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윤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문구수정 2022.10.07.]

② 안건 상정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해 공과대학 특별기구는 해당 회원 신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18.04.03.> <개정 2019.09.10.> <개정 2022.10.07.>

③ <삭제 2018.04.03.>

④ <삭제 2018.04.03.>

####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기구)** 본회는 공과대학 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공과대학 산하기구, 공과대학 특별기구, 학부/과/전공/반 학생회로 구성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3.07.12.> [문구수정 2023.10.13.]

**제7조 (공과대학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개정 2018.04.03.> [이하 ‘산하기구’를 ‘공과대학 산하기구’로, ‘특별기구’를 ‘공과대학 특별기구’로 문구수정 2023.10.13.]

-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2장의 상설집행기구인 공과대학 산하기구 및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과대학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4.03.>
- ② 공과대학 특별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하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 및 해산한다. <개정 2016.09.22.>

### 제8조 (학교 당국과의 협의)

- ①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1. 본회의 활동에 관련한 회원의 징계 사항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3.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계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4. 기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의장과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정한 경우 학교 당국에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공과대학 학생총회

[이하 '공과대학 학생 총회'를 '공과대학 학생총회'로 문구수정 2023.10.13.]

제9조 (지위)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 제10조 (의장)

- ①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 학생총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

**제11조 (소집)**

-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소집할 의무가 있다.
  -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2.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개정 2016.09.22.>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2조 (역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 결정한다.

**제13조 (의결)**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휴학생은 재적 수에 제하되 총회에 참석한 경우 재적 수에 더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23.10.13.]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투표)** <신설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정책을 총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붙일 수 없다. [문구수정 2023.10.13.]

- ② 총투표는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③ 총투표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학생은 재적수에 제하되 총투표에 참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
-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6장에 따른다. 단,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장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및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 제1절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문구수정 2018.04.03.] [이하 ‘공학대회’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로 문구수정 2023.10.13.]

**제15조 (지위)** [문구수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23.10.13.]

**제16조 (구성)**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단, 1인을 복수의 대의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7.03.30., 2018.04.03.>

1.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2.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단, 각 학부/과/전공/반의 부학생회장은 최대 2인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3.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 대표 1인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18.10.04.]

4. 공과대학 정식 등록 동아리가 요구할 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정받은 그 동아리의 대표자  
<개정 2016.06.27.>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문구수정 2023.10.13.]

②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신설 2018.04.03.>

③ 예외적으로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전까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신설 2018.04.03.>

**제16조의2 (학부/과/전공/반 대의원 예외규정)** <신설 2018.10.04.> <개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 학생회의 대표자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

② <삭제 2022.10.07.>

③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의 학년 대표와 그 소속 전공/반의 학년 대표가 동시에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대의원 구성을 결정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

④ <삭제 2022.10.07.>

⑤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① 의장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여 대외적으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6.09.22.>

**제18조 (소집)**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문구수정 2023.10.13.]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제18조의2 (공고)** <신설 2018.04.03.>

- ①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회의장소, 일시, 소집 경위 및 과정,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업무)** <개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
  4.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문구수정 2018.04.03.]
  5.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6. 학생 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의 건의
  7. 기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신설과 폐지 <개정 2018.04.03.>

②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공과대학 산하기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제20조 (요구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공과대학 산하기구에 대해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②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

**제21조 (탄핵)** <개정 2016.06.27.>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② 탄핵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2조 (개의 및 의결)**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의 경우 제56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2016.09.22.>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23조 (안전상정)** <개정 2018.04.03.>

① 제8장에 의한 회칙개정을 제외한 의안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개회 3일 전까지 안전을 상정한다.

② 제8장에 의한 회칙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03.>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신설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 제2절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제24조 (지위)**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못한 경우 회칙개정을 제외한 그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5조 (구성)**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되, 학부/과/전공/반 부학생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참석자가 1인 이상일 때 정족수와 의결권은 1인에 준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10.13.]

**제25조의2 (학부/과/전공/반 운영위원 예외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한 학부/과 학생회와 그 소속 전공/반 학생회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동시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학부/과 학생회에서 운영위원 구성을 결정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12.>

**제26조 (의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문구수정 2018.04.03.]

**제2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18.04.03.]

① 공과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조정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전체 예산 결산을 심의·검토·조정하여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 ③ 과반수의 발의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나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 ⑤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 ⑥ 기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⑦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을 보고받고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와 공과대학 산하기구,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07.12.] [문구수정 2023.10.13.]
- ⑧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의결한다. <신설 2018.04.03.>

**제28조 (소집)** <개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운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문구수정 2023.10.13.]

**제29조 (의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2 (회의 운영 시행세칙)**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13.>

## 제4장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23.10.13.]

### 제1절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문구수정 2023.10.13.]

#### 제30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원 중 각 1인으로 한다.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탄핵, 사퇴, 사망 등으로 유고상황인 경우에는 제58조의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의 의장, 부의장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문구수정 2022.10.07.]

#### 제31조 (공과대학 학생회장)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공과대학 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및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3조 (임기)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9.22.>

제34조 (선출) [문구수정 2014.10.29.]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 ②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제42조에 해당하는 학부/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과는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09.22.> [문구수정 2014.10.29.]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6장을 따른다.

**제35조 (선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행한다.

“본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6조 (신분보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37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제40조에 의해 구성된 각 부서의 장의 임명 및 해임권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 ②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문구수정 2018.04.03.]
- ③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 사항 중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④ 기타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실행한다.
- ⑤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8.04.03.>

## 제2절 공과대학 집행위원회

[이하 '집행위원회'를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로 문구수정 2023.10.13.]

**제38조 (지위)**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문구수정 2023.10.13.]

**제39조 (구성)** <개정 2018.04.03.>

- ①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설 2018.04.03.>
- ② 집행위원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신설 2018.04.03.>
- ③ 집행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필요에 따라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04.03.>

**제40조 (부서 및 업무)**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부 부서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이때 부서의 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임하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개정 2018.04.03.>

**제40조의2 (공간 조정)** <신설 2019.09.10.>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된 공간의 심사 권한을 가지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공간 조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는다. 공간 조정은 최종적으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단위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10.07.>
- ②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공간 조정 해당 단위가 공간 조정 심사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대표자 등에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2.10.07.>
- ③ 기타 공간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공간조정세칙을 따른다.

## 제5장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1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구성 및 활동은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칙에 의거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제42조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해당 학부/과/전공/반을 대표하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및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문구수정 2018.04.03.]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 [문구수정 2023.10.13.]

**제43조 (학부/과/전공/반 대표)** 학부/과/전공/반 대표는 각 학부/과/전공/반의 학년을 대표하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7.03.30.> <개정 2018.04.03.>

## 제6장 선거

**제44조 (선거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2학기 중 실시하되 그 구체적인 일정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10.29., 2016.06.27.>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문구수정 2023.10.13.]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문구수정 2017.09.29.]
- ②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학부/과/전공/반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4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2.>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접수·심의·처리한다.

<개정 2017.09.29.> <개정 2019.09.12.>

⑤ <삭제 2019.09.12.>

⑥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각각 그 회칙에 따른다.

#### 제46조 (선거방법)

① 본 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② 입후보자는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조문이동 2023.10.13.>

③ 선거운동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09.12.> <조문이동 2023.10.13.>

④ 투표일은 3일 이상, 5일 이하로 하고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되, 기간은 본투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6.06.27.> <개정 2019.09.12.> <조문이동 2023.10.13.> [문구수정 2023.10.13.]

⑤ <삭제 2017.09.29.> <조문이동 2023.10.13.>

⑥ 개표는 휴학생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의 과반수 투표율을 달성할 시 진행한다. 단, 휴학생이 투표할 경우 분모와 분자에 셈을 더한다. (예: 재학생 3500, 휴학생 500명 中 재학생 2000명, 휴학생 250명이 투표한 경우의 투표율 =  $100 \times \frac{(2000+250)}{(3500+250)}(\%)$ ) <개정 2014.10.29.> [문구수정 2016.06.27.] <조문이동 2023.10.13.>

⑦ 본회의 선거에서 당선은 최다득표 후보와 차점득표 후보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단, 한 조의 후보만으로 투표가 진행된 경우 당선은 찬성표가 유효 투표의 과반이고 찬성표와 반대표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조문이동 2023.10.13.>

⑧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09.29.> <조문이동 2023.10.13.>

**제47조 (보궐선거)**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① 학생회장단 모두가 유고일 때 해당 유고일로부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②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세부 내용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8.04.03.>

③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0.07.>

**제48조 (선거시행세칙)** [문구수정 2014.10.29.] <개정 2014.10.29., 2016.06.27.> [문구수정 2023.07.12.]

① 선거시행세칙은 선거관리기구,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신설 2023.10.13.>

② 선거시행세칙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2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신설 2017.09.29.>

③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7.09.29.>

## 제7장 재정

**제49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0조 (경비와 관리)**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학생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집행한다.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회비 배분금의 일부를 공과대학 산하기구에 우선 할당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9.22.> <개정 2018.04.03.>

**제5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33조에 명기된 임기에 준하며, 회기는 제1기 12월 1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제2기는 제1기

이후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27., 2016.09.22., 2018.04.03.>

#### 제52조 (예산)

- ① 매 회기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검토·조정하여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 ②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가 개최되지 못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문구수정 2023.10.13.]
- ③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

**제53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09.22.>

#### 제54조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 지원) [문구수정 2016.06.27.]

- ① 모든 지원은 공과대학 집행위원회가 심의하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문구수정 2016.06.27.] [문구수정 2023.10.13.]
- ② 지원 대상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중적 기획 행사로 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 ③ <삭제 2018.04.03.>
- ④ <삭제 2018.04.03.>
- 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단위는 사업 1주전 사업계획서를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 실행 후 1주일 이내에 내역을 제출한다. 단, 내역으로 항목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소명하여 인정될 경우 예산 지원을 집행한다. [문구수정 2016.06.27.] <개정 2018.04.03.>

## 제8장 회칙개정

[문구수정 2023.10.13.]

제55조 (발의) 회칙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문구수정 2023.10.13.]

- 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
- ②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발의
- ③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56조 (의결·공포) 발의 시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2018.04.03.]

## 제9장 공과대학 학생회 준비위원회

제57조 (구성) <삭제 2018.04.03.>

제58조 (업무) <삭제 2018.04.03.>

## 제10장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제59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문구수정 2023.07.12.]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상황인 경우,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단, 연석회의의 구성은 제25조의2를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3.> <개정 2023.07.12.>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와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식 명칭은 '0000(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0000 (해당년도)년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한다.
2.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운영위원회', 약칭 '공과대학 연석회의'로 같음한다.
3.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의 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과대학 산하기구'로 호칭한다.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3.10.13.]

③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한다. <개정 2016.06.27> [문구수정 2018.04.03.]

④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는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문구수정 2018.04.03.]

#### **제60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1조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 [문구수정 2018.04.03.] [문구수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문구수정 2023.10.13.]
- ②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공과대학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으로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 의장이 구성한다.

## 제11장 공과대학 동아리

<전면개정 2018.04.03.> <개정 2020.05.11.> [문구수정 2023.10.13.]

**제62조 (목적)**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대학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수정 2017.03.30.]

**제63조 (구성)** 공과대학 동아리는 가등록 동아리와 정식등록 동아리로 구성된다. <신설 2017.03.30., 조문이동 2018.04.03.>

**제64조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 <신설 2018.04.03.> <개정 2020.05.11.> <개정 2022.10.07.>

- ① 공과대학 동아리 관련 제반 사항의 조정을 위해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 ②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
  2.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지정하는 집행위원 1인 <개정 2022.10.07.>
  3. 정식등록 동아리의 대표자
- ③ 가등록 동아리의 대표자는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발언권을 가진다.
- ④ 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회장단 중 1인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⑤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1학기에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65조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 <신설 2018.04.03.> <삭제 2020.05.11.> <신설 2022.10.07.> [문구수정 2023.10.13.]

- ①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의 등록, 권리, 활동심사,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동아리 관리 시행세칙은 공과대학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심의한 후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 제12장 공과대학 산하기구

<신설 2018.04.03.> <개정 2019.09.12., 2020.05.11.> <개정 2022.10.07.>

### 제1절 총칙

#### 제66조 (구성)

- ① 공과대학 산하기구는 공과대학 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 [문구수정 2023.10.13.]
- ② 공과대학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등록은 제8장에 따른 회칙개정을 통해 한다.
  - 1. <삭제 2019.09.12.>
  - 2.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
- ③ 공과대학 산하기구는 기구의 장 1인을 둔다.
- ④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매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장과 회계담당자를 인선하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나 구성 등에 관하여 각 공과대학 산하기구가 각 기구의 운영세칙(이하 ‘기구운영세칙’)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그에 따른 인선 현황을 확인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공과대학 산하기구는 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공과대학 산하기구가 회칙개정,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거나 당해 공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해당 공과대학 산하기구를 대상으로 특별 공간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0.05.11.>

### 제67조 (장의 해임 및 기구의 해산)

①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발의와 출석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제70조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2.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기구운영세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구 운영의 파행에 있어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문구수정 2022.10.07.]

②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는 공과대학 산하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가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공과대학 산하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또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대학본부 및 공과대학본부, 기타 외부세력과 협력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 제68조 (지위)

① 공과대학 산하기구는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에서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발의하는 의안이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의견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공과대학 산하기구 및 공과대학 집행위원회는 각 이안(異案)을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 제69조 (재정)

①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재원은 본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과대학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비에서 지급한다.

②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최종 결정권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있다.

### 제70조 (보고 및 감사)

①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장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 내역 및 사업 계획

②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장은 5월과 11월의 첫 번째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③ 집행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각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장들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문구수정 2023.10.13.]

④ 공과대학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과대학 산하기구의 운영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과대학 산하기구는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필요한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71조 (기구운영세칙) 각 공과대학 산하기구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기구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단, 기구운영세칙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 제2절

<삭제 2019.09.12.>

제72조 <삭제 2019.09.12.>

제73조 <삭제 2019.09.12.>

제74조 <삭제 2022.10.07.>

제75조 <삭제 2022.10.07>

### 제3절

<신설 2020.05.11.> <삭제 2022.10.07.>

###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 규약의 해석과 적용은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총학생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16.06.27.>

부칙(2022.10.07.)

<삭제 2023.10.13.>

부칙(2018.04.03.)

<삭제 2019.09.12.>

